

# 안산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95. 3.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유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건설부령 제880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것임.

## □ 주요골자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및 그 구체적 기준 (안 제4조)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 (안 제6조)
-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 (안 제7조)
-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징수등 (안 제9조, 제10조)

##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시공원법 제8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 경기도 도시 58401 - 1905 ('94. 9. 14)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 개정통보 (건설부령 제880호)  
.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 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 제 4 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증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 5 조 (공원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 6조 제 1항 제 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허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6 조 (녹지의 적용허가)** ①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적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조**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 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되게 할 것

제 7 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 (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해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출 및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0 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유 재산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 11 조 (시행 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및 제13조는 이를 폐지한다.

#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 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 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 한 금액의 100분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방화용 저 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8. 조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조례

건설부준칙	안산시(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준칙)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준칙)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 (정의) 이 조례(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li> </ol>	<p>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li> </ol>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p> <p>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p> <p>3. "관리용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p> <p>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시장(군수)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p>	<p>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p> <p>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p> <p>3. "관리용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p> <p>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p>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②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②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p>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 시장(군수)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li> <li>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영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li> <li>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ul> </li> </ol>	<p>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li> <li>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영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li> <li>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ul> </li> </ol>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p> <p>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p> <p>바.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p> <p>제6조 (녹지의 점용허가) ①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li> <li>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li> </ol>	<p>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p> <p>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p> <p>바.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p> <p>제6조 (녹지의 점용허가) ①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li> <li>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li> </ol>

건설부준칙	안산시(안)
<p>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 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p> <p>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 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斷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p> <p>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p> <p>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p> <p>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p>	<p>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 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p> <p>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 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斷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p> <p>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p> <p>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p> <p>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p>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li> <li>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것.</li> <li>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등의 조경 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것.</li> </ol> <p>제7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p>	<p>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li> <li>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것.</li> <li>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등의 조경 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것.</li> </ol> <p>제7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p>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조 (점용률의 관리) ①시장(군수)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은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 (점용률의 관리) ①시장(군수)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은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p> <p>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p>	<p>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출 및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p> <p>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p>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p>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또는 시장(군수)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li> <li>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li> <li>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li> <li>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li> </ol>

건 설 부 준 칙	안 산 시 (안)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폐지조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도시공원조례 제8조 및 제13조는 이를 폐지한다.</p>

# 타 도 시 의 점 용 료 등 과 의 비 교 표

점 용 대 상	안산시조례제정(안)	타 도 시 의 점 용 료		안산시 공유재산 관 리 조 레	안산시 도시공원 조 레 (기 존)	비 고
		성 남 시	광 명 시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외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8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80을 곱하여 산 정 한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분 의 8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 (일반적 기준)	인근토지가액의 6/100	*도로점용료(안산 시) · 건물진입로- 토지 가격의 2.5/100 · 철도등-토지가격 의 5/1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3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30을 곱하여 산 정 한다.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0분의 3	"	"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 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5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30을 곱하여 산 정 한다.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0분의 3	"	인근토지가액의 6/100을 일별로 산정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5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50을 곱하여 산 정 한다.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	—	

## 타 도 시 의 점 용 료 등 과 의 비 교 표

점 용 대 상	안산시조례제정(안)	타 도 시 의 점 용 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기존)	비 고
		성 남 시	광 명 시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산지근처의 시가에 서 채굴 및 운반비 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곱 하여 산정한다.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 외한 금액의 100분의 5 (점용면적 재산가액 -제외금액) × 100분 의 5	재산평정가격의 50/ 1,000 (지상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사용 료에 추가)	산지 근처의 시가에 서 채굴 및 운반비 를 제외한 금액의 70/100	●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100을 곱하여 산 정한다. 다만, 전주 의 경우 1주당 단주 인 때는 500원, H주 인 때는 800원으로 하며 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재산 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다.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재산평정가액의 50/ 1,000 (일반적기준)	인근토지가액의 6/100	※ 도로점용료 토지가액의 5/10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 는 용수의 취수시설 , 관개용수로, 생활 용수의 공급을 위하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 의 30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 산가액의 100분의 10	"	—	

## 타 도 시 의 접 용 료 등 과 의 비 교 표

접 용 대 상	안산시조례제정(안)	타 도 시 의 접 용 료		안산시 공유재산 관 리 조 레	안산시 도시공원 조 레 (기 존)	비 고
		성 남 시	광 명 시			
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접용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접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접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0	재산평정가액의 50/ 1,000 (일반적기준)		